

# 제주지역의 공공갈등 관리방안과 향후 정책 과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고 승 한

##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공공갈등관리와 사회통합
-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방안
- IV. 맺으면서

## I. 문제 제기

인간사회에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정치·경제·사회발전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반면에 새로운 역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는 긍정의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갈등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가치, 이념, 종교, 지역, 빈부격차, 세대차이, 노사대립 등으로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그리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획 및 집행하는 국책사업 혹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 가끔 발생하여 지역주민 간 그리고 지역주민과 정부·지자체 간에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어 지역사회의 통합

과 평화를 해치곤 한다.

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갈등을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하는지는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는 견해를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공공정책 사업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수록 긴장과 대립은 더 확대되어 공공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제주사회는 어떠한가? 최근 몇 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지역공동체가 그야말로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져 회복할 수 없는 갈등상황으로 치닫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또 다시 불거져 지역주민과 정부·지자체 간에 반목과 대립으로 도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공공갈등은 사전에 예방되거나 발생 후 원만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글에서는 공공갈등 관리체계와 사회통합 간에 관계를 설명하고, 제주지역의 공공갈등관리 방안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공공갈등관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공공갈등 관리와 사회통합

### 1. 사회협약제도의 등장과 발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주요 갈등은 노사갈등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가 공고화되어 국가자본연합체제는 노동부문의 거센 반발을 불리와 투쟁의 산물로 노동자의 이익과 보호,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합의가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협의기구에서 타결되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 간의 투쟁, 대립, 그리고 갈등 등을 사회적 대화와 민주적 협의를 거쳐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바로 사회협약제도이다. 사회협약제도는 오늘날 다양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 시스템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사회들이 갈등관리 및 해결시스템으로써 사회협약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이에 후진사회도 그것을 도입하는 단계에 이렀다.

사회협약제도는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국책사업 혹은 공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개입된다. 이들 이해집단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바로 사회협약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협약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 그리고 대립과 갈등 사안들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상과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서구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에 익숙한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협약제도는 사회적 분쟁이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구사회(특히 서유럽 국가)의 사회협약제도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특히 임금인상, 차별시정 등)에 대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 2. 공공갈등관리 체계와 사회통합

우리나라에 사회협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 1월이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협약기구를 구성하여 노-사-정 3자의 협의와 협력으로 국가의 사회갈등과 위기 상황을 돌파하여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였다. 그 당시 국가는 소위 IMF 외환위기로 국가 전체적으로 갈등과 위기를 겪었다. 예컨대, 기업체의 파산 및 연쇄 부도사태, 노동자의 대량해고 및 강제퇴직, 대량 실업 발생, 기업의 구조조정,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이 확산되어 한국사회는 총체적 갈등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정착과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sup>1)</sup> 우리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노

1)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하여서 지속되어 오다가 2007년 4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

사양측의 이해관계 갈등으로 빚어지는 여러 사회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협약제도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자본연합 체제가 지배적인 경제사회의 구조하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노동자의 권익증진, 노사관계 발전의 법·제도적 개선 등에 한계점을 보여 왔다.

서구사회는 노사정이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협의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주로 노동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써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공공갈등은 어떠한가? 공공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도 사회협약제도의 틀 안에서 정립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국책사업 혹은 공적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별도의 예방 및 관리되어 온 지 그 역사가 오래지 않다.

예를 들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국책사업(예, 방사능 폐기물 처리, 댐 건설, 천성산 터널 건설, 밀양송전탑 건설, 4대강 사업, 사드 배치 등) 추진은 공공갈등의 전형적 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6).

그 동안 정부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대상자(중앙정부, 지자체, 시민, 지역주민, 단체 등)와의 사회적 협의와 동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주로 일방적·하향식 DAD(Decision, Announce, Defense 결정-발표-방어) 방식에 의존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더욱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사한 공공갈등이 부문별 혹은 지역별로 발생했을 때 체계적 관리보다는 일회적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거나 갈등관리 체계가 아예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공공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원래 의도한 사업목적은 사라지고 갈등해결이 목적화 되버리는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들

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http://www.esdc.go.kr>).

이 하나의 갈등관리 시스템에 기반 두어 해결될 때 진정한 사회통합도 가능하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여 오히려 악화되면 지역사회통합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개인, 조직, 집단, 지역 등이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혹은 지자체에 대한 신뢰감이나 연대감이 상실하여 오히려 대립감과 저항감을 가질 때 사회안정과 질서의 균열을 가져와 사회통합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과 균열이 발생하여 오래 지속될 경우에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국 사회통합의 위기로 가게 된다. 사회통합의 위기는 “어떤 특정 사회에서 개인, 조직 집단, 지역 내부 혹은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치 및 이익갈등이 사전에 조정되지 못하여 상호 간에 갈등이 표출되어 사회안정과 질서 및 발전에 위협을 주는 상태”(고승한, 2010: 17)로 규정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위기 단계로 가기 전에 공공갈등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소 예방·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소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위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인들을 잘 진단하는 일은 바로 사회통합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먼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이 도민사회의 실제 이익과 혜택을 반영하고 있는지, DAD(결정-발표-방어) 방식에 의해 정책(혹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갈등예방 및 조정기구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지, 정책기획,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기관(혹은 책임자)의 역할은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안들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공공갈등의 발생은 다른 어떤 사회적 갈등보다는 공공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공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공적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소에도 깊이 간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갈등 발생의 소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갈등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이다.

결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평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갈등을 관리해 나가느냐는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일 것이다. 오늘날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은 공공갈등 예방, 조정 및 해소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시민, 단체 등)들이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민주적 심의와 자율적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방안<sup>2)</sup>

제주지역에는 역사 발전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사회갈등(예, 이념, 노사, 선거, 환경, 공공갈등 등)이 존재해 왔고, 현재도 표출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소위 민군복합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는 공공갈등의 심각성과 폐해성을 볼 수 있었다. 사실상, 마을 공동체 내에서 마을 주민 간, 그리고 마을주민과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대립과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다시 공공갈등 관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는 일찍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출범(2006. 7. 1)과 더불어 사회협약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협약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었다. 바로 사회협약위원회가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주요 특성과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제도의 주요 특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부분의 제152조(사회협약)에 기반하여 도입되었다. 그래서 2007년 11월 21일 지역사회의 분야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도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3월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에 의하면(제주특별자치도, 2011), “①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방안의 전반적 내용은 강창민·고승한(201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그리고 고승한(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위원회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 내용을 재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된 사항에서 보듯이, 도지사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협약 체결과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직능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사회협약제도가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되는 데 법률적 한계가 있다. 그 동안 사회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일부 보완되기도 하였다. 중요한 과제는 갈등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과 사회문제와 분쟁 및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비록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예산 지원이나 도민 권리제한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간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제도는 도지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머물러 있지만 독립적 운영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얼마나 사회협약제도의 장점을 살려 도민사회의 사회갈등을 해소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하여 사회협약제도가 운영되는데 도지사의 자문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위상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협약이나 갈등해소 등에 대한 심의 혹은 더 나아가 의결기능까지도 포함되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확장되어 나가려면 사무국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사무국이 없어서 단·중장기적 사업발굴과 활동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일 사무국이 설치되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2년 6월 11일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사무국 설치와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이전에 비하여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이 더욱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도 조례에 의해 제1기 위원회가 2008년 3월 31

일 출범하여, 그 후 2010년 4월 11일 제2기, 2012년 7월 31일 제3기, 2014년 9월 27일 제4기, 그리고 2016년 11월 10일에는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표 1. 참고).

지금까지 사회협약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예산, 인력, 책임 및 지위, 보상 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물론 초기에는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이 처음이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해가 갈수록 이전 위원회보다 더 잘해 보려는 위원회 위원들의 의지와 노력들이 배가되면서 활동들이 다양하였고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표 1〉 사회협약위원회 기별 주요 활동 (2008. 3. 31~2017. 10. 18)

기 별	기 간	주요 활동 내용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	2008. 3. 31~2010.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li> </ul>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2010. 4. 21~2012.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소위 제주해군 기지) 건설 관련 갈등해소 추진</li> <li>• ㈜동서교통 노사갈등 해소</li> <li>• 어린이 비만 예방 사회협약, 자동차 대여업 항공 24시 운영시 갈등 검토</li> </ul>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2012. 7. 31~2014.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동항만계획 변경에 따른 갈등 최소화 및 검토 의견 제시</li> <li>•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 안 마련 등</li> </ul>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	2014. 9. 27~2016.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각각 개최</li> <li>• 4·3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3차례 현장 방문 실시</li> </ul>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	2016. 11. 10~2018.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협약위원회 역량 강화 및 운영 방안 모색 등 워크숍 개최</li> <li>•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 개최</li> <li>•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감귤농가 권익과 감귤산업발전 증장기 대책 협의 등</li> </ul>

지난 10년 동안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은 주로 사회협약 체결, 갈등해결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분과별 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 등에 역점을 두어 전개되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전 갈등영



향분석 지침 제정 등에 힘써 왔다. 결국 조례 개정과 갈등영향분석 등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사회협약위원회가 그 동안의 여러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한계점이 있다. 예컨대, 사회협약과 갈등해소 등에 자문기능 역할, 운영 컨트롤타워의 부재, 위원회 위원들의 지식·경험·전문성 미흡, 사회협약 사례 관리의 부재, 예산과 인력의 부족,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 등의 한계점이 있지만 사회협약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성과는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한계점들은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V. 맺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예컨대,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순유입인구의 증가, 부동산 및 주택경기의 호황,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제2공항 건설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 한·미 FTA 재개정 시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이 제주사회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 사회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주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지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결론을 대신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서 전문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조사연구, 갈등영향평가, 사회협약과 갈등해소의 컨트롤타워기능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 이해 당사자(조직, 집단, 지역 등), 지역시민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민주적 절차와 운영에 의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협약뿐만 아니라 갈등예방 및 갈등해소, 그리고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ADR 방법에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등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승한, 2010). 제주지역의 분쟁 혹은 갈등해결에 ADR 방식을 적용하려면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갈등중재와 조정 등의 갈등관리와 사회협약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도내 대학 혹은 사회교육 기관에서 갈등관리사를 양성·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무국 설치와 더불어 사회협약위원회 담당 부서의 인력과 예산 확충과 더불어 (가칭)갈등담당관을 두어 사회협약 체결,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해소, 사회통합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

여섯째, 사회협약제도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착근되고, 아울러 공공갈등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도민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의의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단기·중장기 사업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창민·고승한(201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이슈브리프 Vol. 266. 제주연구원.
- 고승한(2010), 「제주지역 사회통합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200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국무조정실(201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28호
- 제주특별자치도(2017), 「주민등록 통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집」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2017), 「관광객 내도현황」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http://www.esdc.go.kr>